

2024년 Updated!

FP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금상담 실전

보험세제_01_보장성 보험 편

강사 : 다린세무회계컨설팅
세무사 김종완



과정 개요

- 1 개인보험계약 및 단체보험계약에 대한 세제
- 2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(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)
- 3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(소득세법 제59조의3)
- 4 연금계좌 관련 선택적 분리과세 활용 방안

기대 효과

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보장성보험을 가입 함으로써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, 연금계좌 관련 선택적 분리과세 활용방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
개인보험계약 및 단체보험계약에 대한 세제

개인보험계약에 대한 세제

■ 보험료 납입 단계

-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
- 연금계좌 세액공제

■ 보험료 수령 단계

-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

단체보험계약에 대한 세제

■ 법인

- 피보험자 / 수익자 : 종업원
- 전액 필요경비 손금(비용)인정
- 종업원의 복리후생비, 보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

■ 종업원

- 근로소득세 비과세
(회사부담 연 70만 원 이하)
- 연 70만 원 초과 시 근로자의 상여 등 근로소득세 과세

세법 상용어 정리

비과세

- 법인세, 소득세 등 과세하지 않음
- 만기 및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, 퇴직소득세, 기타소득세 등 과세문제 없음

세액공제

-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비율(12%, 15%) 공제
-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인 과세표준 위 구간에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, 세액공제는 세율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임

분리과세

- 일정금액까지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
- 이자소득 : 수입금액 2천 만 원 미만의 금액은 15.4% 원천징수 후 종소세 신고, 납부의무 없이 종결
- 기타소득 : 기타소득금액(수입금액 - 필요경비 60%제외 금액)이 3백 만 원 미만의 금액은 8.8% 원천징수 후 종소세 신고, 납부의무 없이 종결

종합과세

-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의무 발생
- 이자소득 : 2천 만 원 이상의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납부 의무 있음
- 기타소득 : 기타소득금액 3백만원 이상의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납부의무 있음

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

일반 보장성 보험

- 일반보장성 보험 :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
ex) 생명보험,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 등

만기환급금 ≤ 납입보험료

- 세액공제 내용

- 기본공제대상자 (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등)를 피보험자로 함
- 보험료의 12% (지방소득세 별도, 연 100만 원 한도) 세액공제

- 대상 : 근로소득자 (사대보험료를 납입하는 대표자, 임원, 직원 등 근로자)

- 연금소득자, 개인사업자,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

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

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요건

보험료납입자	피보험자	연간소득금액	연령	세액공제
본인	부모	100만 원 이하	만 60세 이상 (1963. 12.31. 이전)	가능
본인	배우자		나이요건 없음	가능
본인	자녀		만 20세 이하 (2003. 12. 31. 이전)	가능
본인	형제 / 자매		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	가능

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

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

- 기본공제대상자(근로소득자)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
(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)
- 세액공제 내용
 -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험료(연간 100만 원 한도)의 15%(지방소득세 별도) 세액공제

보장성보험의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여부

- 해지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**세액공제 가능**
- 이미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는 **추징되지 않음**

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

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사례

-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실비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각각 100만 원 씩 납입한 경우
 - 세액공제 12만 원 (지방소득세 별도), 실비보험, 생명보험, 자동차보험 등 합계 연 100만 원 한도 (12%)
-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의 장애인 자녀를 위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일반 보장성보험료를 각각 연 100만 원씩 납입한 경우
 - 세액공제 12만 원 (12%) + 15만 원 (15%) = 27만 원 (지방소득세 별도)
-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연간 보험료를 100만 원 납입한 경우
 - 사업소득자는 보장성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(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처리)

연금계좌의 세액공제

연금계좌의 개요

- 연금계좌 :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통칭하는 개념

(연금저축계좌 + 퇴직연금계좌)

-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계좌

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신탁, 연금저축펀드, 만기된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
Min(전환금액 x 10%, 300만 원), 추가 세액공제 적용

-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계좌

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, 개인형 퇴직연금(IRP)

다만, 확정급여형(DB)퇴직연금은 공제대상 연금계좌에서 제외

연금계좌의 세액공제

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내용

- 공제율 :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2% (15%) 세액공제 (지방소득세 별도)
 - 종합소득금액 4,500 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,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%(지방소득세 별도) 세액공제, 그 이상인 자는 12% 세액공제
- 공제 한도 : 연금저축 납입 연 600만 원, (퇴직연금 포함 시 연 900만 원)
- 2023년 1월 1일 이후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600만원까지,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 연 900만 원까지 한도 증액
단, 소득요건에 따른 12%, 15% 공제율 적용은 동일함

연금계좌의 세액공제

총급여액 별 공제한도 및 공제비율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공제율
4,500만 원 이하 (5,500만 원)	600만 원 (900만 원)	15%
4,500만 원 초과 (5,500만 원)		12%

※ 다만, 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.

연금계좌 관련 적용 사례

적용사례 (총급여 5천 만 5백 만원 근로소득자)

- 나이 40세, 연금저축계좌 연 100만 원, 퇴직연금 IRP 연 700만 원 납입 시

$$\min [(100 + 700), 900] = 800\text{만 원} \times 15\% = 120\text{만 원 (지방소득세 별도)}$$

- 나이 55세 연금저축계좌 연 700만 원, 퇴직연금보험 연 100만 원 납입 시

$$\min [(600+100), 900] = 700\text{만 원} \times 15\% = 105\text{만 원 (지방소득세 별도)}$$

적용사례 (사업소득금액 1.2억 원 사업소득자)

- 나이 40세, 퇴직연금 IRP 연 1,000만 원 납입 시

$$\min [(0 + 1,000), 900] = 900\text{만 원} \times 12\% = 108\text{만 원 (지방소득세 별도)}$$

- 나이 55세 연금저축계좌 연 400만 원, 퇴직연금보험 연 300만 원 납입 시

$$\min [(400+300), 900] = 700\text{만 원} \times 12\% = 84\text{만 원 (지방소득세 별도)}$$

연금계좌 관련 선택적 분리과세 활용 방안

수령한도 초과 시 과세방식의 변화

■ 연금계좌 인출 순서

1.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 : 과세제외
2. 퇴직금 원금 : 10년 이내 퇴직소득세 70% / 10년 이후 퇴직소득세 60%
3.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원금 : 연금소득세 (세율 3~5% 조건부 분리과세)
4. 운용수익 : 연금소득세 (세율 3~5% 조건부 분리과세)

■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개정사항 (분리과세 기준금액 1,500만원 상향조정)

1. 연 1,500만 원 이하 : 수령시기에 따른 3~5% 조건부 분리과세
2. 연 1,500만 원 초과 :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

연금계좌 관련 선택적 분리과세 활용 방안

수령한도 초과 시 과세방식의 변화

-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에 따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간 의사결정이 가능
 - 연금소득이 1,5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업, 근로 등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적용 간 의사결정이 달라짐
 -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6% 구간(1,400만 원 이하)이 분리과세 15%보다 적용세율이 낮으므로 **종합과세가 유리**
 -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5% 구간(1,400만 원 ~ 5,000만 원)이 분리과세 15%와 적용세율은 동일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건강보험료가 합산되지 않는 **분리과세가 유리**
 -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4%~45% 구간(5,000만 원~10억 원 초과)이 분리과세 15%보다 적용세율이 높으므로 **분리과세가 유리**